



비상전원 등

제2편 안전기준

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제308조 ~ 제310조

비상전원/임시 전등 사용 시 위험방지

정전에 의한 기계·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·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에 비상전원을 공급해야 하며,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에는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.

1 비상전원

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

1

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에 비상발전기, 비상전원용 수전설비, 축전지 설비, 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조치

2

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함



2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

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

1

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, 가설의 배선,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써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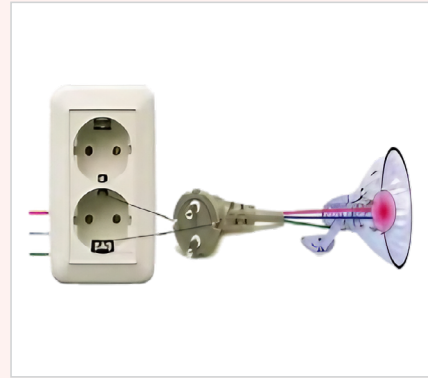
2

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

-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
-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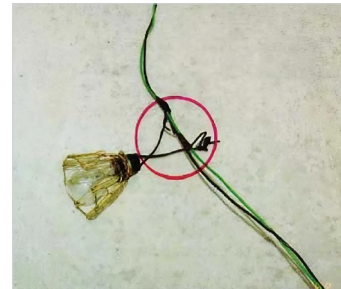


이동식 작업 등 보호망 및 배선 접속부 점검 철저



접지극부 꽃음 접속기(일반용)

※ 임시조명등 불량 사례



3 전기기계·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

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

1

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.
 다만,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 예외

2

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

